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조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26조, 제28조, 제32조)

나. 산림청 임업분야 규제개선 과제 정비(안 제30조)

-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의 채취료 산정을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기준 변경

다.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안 제30조, 제66조)

- 감정평가기관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 조항 변경(안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 종전 분할납부 이자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율 조항 변경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변경 및 신설(안 제40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3. 조 례 안 : 불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투자통상과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구미시”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를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석시가라 함은”을 “원석시가란”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을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5항까지 중 “연 3퍼센트의”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고시”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따라 교환차금을”을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로,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교환차금을”을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로,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를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준일인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건물 바닥면적”을 “그 건물 바닥면적”으로, “건물 소유자”를 “그 건물 소유자”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을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미달하거나”를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로, “범위”를 “면적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003년 12월”을 “2012년 12월 31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를 “점유·사용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u> 의 공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u> 의 공유	제1조(목적) -----	구미시---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	-----	-----	
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	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	-----	-----	
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	-----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	호, 제32조제3항-----	
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	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	-----	-----	
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	-----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	-----	-----	
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	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	-----	-----	
법」을 준용한다.	법」을 준용한다.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	④ -----	-----	
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	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	-----	-----	
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	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	-----	-----	
다.	다.	-----	-----	
1.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	<삭 제>	<삭 제>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			

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6. (생략)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3. ~ 6. (현행과 같음)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

----- 세제곱미터당 -----

-----.

② ----- 원석시가란 -----
----- 세제곱미터당 -----
-. <단서 삭제>

③ -----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

--.

④ -----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분할납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같다)-----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

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행정
자치부장관 고시 -----
-----.

⑤ -----

----- 행정자치부
장관 고시 -----
-----.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 할 수 있다.

② -----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 할 수 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
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
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
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
한 경우

3. (생 략)

4.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른 적용기준일인 200
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
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
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바
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남은 공
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
항에 따라 「구미시 건축 조
례」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
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
행령 제84조에 따라 「구미시

2. -----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
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 -----

----- 그 건물
바닥면적----- 그 건
물 소유자-----.

----- 제5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

--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 후 남은 공유지의 위치
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
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
정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생략)

6. 2003년 12월 이전부터 종교
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
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재산
을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생략)

<신설>

<신설>

----- 면적범위
내-----

-----.

5. (현행과 같음)

6. 2012년 12월 31일 -----
----- 점
유·사용하고 -----
- 점유·사용하고 -----

7. (현행과 같음)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
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
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
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에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분할납부의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
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
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
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
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
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
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
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
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자치부장
관 고시 이자로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에 의한 <u>감정평가법인</u>에 의뢰한다.	----- ----- ----- <u>감정평가업자에게</u> ----- ----- -----.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 부하는 경우 <삭제 2016.7.12>

8. ~ 24. 생략

② ~ ⑧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 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 33. 생략

② 생략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16.12.29.)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

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조 석 희
	담 당	현 명 숙
	담 당 자	전 유 향 (480-5072)